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장 총강

제1조 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①본회는 전체 동아리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본회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각 동아리의 주체적 성장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③본회는 각 동아리의 건강한 대학문화 창달과 각 동아리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민주적이고 비영리적이며 건전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 ①본회는 72개의 정동아리와 이로 이루어진 13개 분과, 그리고 본회에 등록된 모든 준동아리로 구성된다.
- ②정동아리 및 준동아리의 요건을 만족하는 동아리가 없을 경우, 그 자리를 빈자리로 둘 수 있다.
- ③정동아리가 등록취소, 강등, 제명 등의 이유로 정동아리의 지위를 잃어 정동아리의 자리가 비었다면 다음 전동대회까지 그 자리를 빈자리로 둘 수 있다.

제4조 총학생회와의 관계

- ①본회는 총학생회와 분리된 독립기구이며, 독자성 및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 ②본회의 회장은 총학생회 산하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적용

- ①본 회칙과 총학생회 회칙이 상충될 경우, 본 회칙을 총학생회 회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과 관례 및 상식을 참조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2장 동아리원

제6조 회원

-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전 구성원으로 한다.
- ②본회에 등록할 수 있는 회원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주 전공이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한정한다.
-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본회의 회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학생
 2.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생
 3.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생
 4. 교환학생
 5. 학점교류생
 6. 중앙대학교 대학원생
 7. 중앙대학교 졸업생
- ④휴학생은 재학생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단, 휴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

제7조 선거권

본회 재등록서류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동아리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피선거권

- ① 4학기 이상 본회 회원으로 등록한 정동아리의 회원은 본회 회장단 피선거권이 있다.
- ② 2학기 이상 해당 분과의 회원으로 등록한 정동아리의 회원은 해당 분과 분과장 피선거권이 있다.

제9조 권리

- ① 동아리원의 자유와 권리는 본 회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 ② 동아리원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회칙 및 세칙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0조 의무

- ① 모든 동아리원은 본 회칙 및 세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모든 동아리는 동아리에 소속된 회원이 본 회칙 및 세칙에 맞게 활동하도록 장려할 의무를 진다.
- ③ 모든 동아리는 예산집행에 관한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전체 동아리 총인원 회의

제11조 지위

전체 동아리 총인원 회의(이하 전동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절대적인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조 구성

- ① 전동총회는 본회에 등록된 전 회원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 ② 전동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

제13조 소집

- ① 전동총회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집회가 결의되었거나 본회 재적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전동총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

- ① 전동총회는 본회 재적회원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전동총회의 의결사항은 본 회칙 및 그 하위기구의 어떠한 의결사항보다도 우선시한다.
- ③ 위급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전동총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권은 전동총회의 의결권과 효력이 같다.

제2절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

제15조 지위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이하 전동대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평시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16조 구성

<동아리연합회 회칙>

- ①전동대회의 구성원은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 각 분과장 및 각 정동아리 회장으로 한다.
- ②전동대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

제17조 위임

- ①동아리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동아리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전동대회 개최 2시간 전까지 상급단위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자에 한한다.
- ②분과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분과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전동대회 개최 2시간 전까지 동아리연합회장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자에 한한다.
- ③이미 전동대회 구성원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 소집

- ①전동대회의 정기회는 학기당 2회 집회된다.
- ②전동대회의 임시회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집회가 결의되었거나 전동대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시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전동대회의 소집은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 경우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전동대회의 소집 3일 전까지 해당 전동대회의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

- ①전동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아리의 제명 및 강등, 재등록서류 심사의 경우 특별안건으로 취급하여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기권표는 유효표에 포함된다.
- ③투표의 수가 출석인원과 다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④기권표의 수가 출석인원의 1/3이 넘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찬성표가 출석인원의 과반일 경우 19조 1항에 의거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가결한다.
- ⑤위급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전동대회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아리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전동대회의 의결권과 효력이 같다.

제20조 총투표

- ①전동대회에서 본회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안건에 대하여 동아리연합회 총투표를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결의 경우 전동대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총투표가 의결된 3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의결된 15일 이내에 총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총투표의 선거권은 본회의 모든 회원이 가진다. 여기서 회원이란 2장 6조에서 말하는 회원이다.
- ④총투표의 투표방식은 본회의 선거세칙을 따른다.
- ⑤총투표의 개표가 완료되면 동아리연합회장은 즉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⑥총투표의 결과가 공고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 ⑦총투표의 결과는 본회의 회칙보다 우선시하며, 전동총회를 제외한 모든 의결기구의 어떠한 의결사항보다도 우선시한다.

제21조 특별기구

- ①전동대회는 업무상 필요한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특별기구의 의장은 업무수행이 끝나면 전동대회에 보고하며, 모든 업무의 수행이 종료되면 특별기구는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22조 탄핵

- ① 동아리연합회장•동아리연합회부회장•분과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회칙이나 세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집행을 소홀히, 혹은 잘못 처리하였다고 사료될 때는 전동대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동운위의 과반수의 발의, 전동대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전동대회에 안건이 상정되며, 전동대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집행국장 탄핵소추의 경우 동운위 과반수의 발의로 동운위에 안건이 상정되며, 동운위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제3절 동아리 운영위원회

제23조 지위

동아리 운영위원회(이하 동운위)는 본회 활동에 관한 최고 운영권을 가진다.

제24조 구성

- ① 동운위는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 및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 ② 동운위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
- ③ 각 집행국장 및 동아리 회장은 동운위를 참관할 수 있다.
- ④ 참관인은 동운위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25조 위임

분과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분과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동운위 개최 1시간 전까지 의장의 확인을 받은 위임자에 한한다.

제26조 소집

- ① 동운위의 정기회는 매달 2번 이상 집회된다.
- ② 동운위의 임시회는 의장 또는 동운위 재적인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제27조 의결

동운위는 회칙 또는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규칙 제정

- ① 동운위에서는 본회의 회칙, 세칙 및 총학생회 회칙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동운위에서는 동운위 재적인원의 1/3이상의 발의 또는 본회 회장의 발의에 의해 논의를 거쳐 규칙을 공포, 수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 ③ 규칙의 적용 기간 및 범위는 동운위에서 결정한다.

제4장 행정기구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

제29조 지위

-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이하 동연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 ②동연회장은 자유로운 동아리활동 및 대학문화 형성과 본 회칙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 ③동연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민주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 ④동연회장은 분과장이나 동아리 회장과 겸직할 수 없다.

제30조 임기

- ①동연회장의 임기는 당선 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11월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임기시작일은 추후 시행되는 선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②동연회장은 본회 회장단에 중임할 수 없다.

제2절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제31조 지위

- ①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하 동연부회장)은 동연회장을 보좌한다.
- ②동연부회장은 동연회장의 부재 시, 그 지위를 대신한다.
- ③동연회장이 탄핵, 자진사퇴, 파면, 장기입원, 사망 등의 이유로 동연회장의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동연회장의 모든 직책 및 지위와 책임을 인계받아 그 역할을 대신한다.
- ④동연부회장은 분과장이나 동아리 회장과 겸직할 수 없다.

제32조 임기

- ①동연부회장의 임기는 당선 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11월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임기시작일은 추후 시행되는 선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②동연부회장은 본회 회장단에 중임할 수 없다.

제3절 집행부

제33조 지위

본회 집행부(이하 집행부)는 본회 활동에 관한 최고 집행권을 가진다.

제34조 임명

- ①집행각국의 장은 동연회장이 추천하여 동운위의 의결을 받아 임명한다.
- ②집행각국의 국원은 해당 집행국장이 임명한다.
- ③집행부의 구성원은 본회에 소속된 회원이어야 한다.
- ④집행부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당선 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11월 선거에서 회장단이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부원의 임기일은 추후 시행되는 선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35조 조직

집행각국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동연회장이 구성한다.

제4절 집행부회의

제36조 지위

집행부회의(이하 집행회)는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37조 구성

- ①집행회는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 및 각 집행국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②집행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 ③각 집행국원은 참관할 수 있다.
- ④참관인은 발언권을 가진다.

제38조 소집

- ①집부회의 정기회는 매달 1번 이상 집회된다.
- ②집부회의 임시회는 의장 또는 집부회의 재적인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제39조 의결

집부회는 회칙 또는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분과자치

제1절 분과

제40조 권한

분과는 회칙과 세칙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1조 배정

- ①분과의 배정은 각 동아리의 매체를 기준으로 한다.
- ②분과의 신설 및 통폐합은 전동대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절 분과장

제42조 지위

- ①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한다.
- ②분과장은 자유로운 동아리활동 및 대학문화 형성과 본 회칙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 ③분과장은 분과의 업무를 민주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진다.
- ④분과장은 동아리 운영 위원회의 소속이 되어 본회의 업무를 민주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43조 임기

분과장의 임기는 당선 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11월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임기시작일은 추후 시행되는 선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3절 분과회의

제44조 지위

분과회의는 분과 활동에 관한 의결권 및 집행권을 가진다.

제45조 구성

- ①분과회의는 분과장과 각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분과회의의 의장은 분과장이 맡으며 분과장이 공석일 경우 본 회 회장이 맡는다.
 - 1. 신규등록한 준동아리는 등록된 학기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6조 위임

동아리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동아리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분과회의 개회 1시간 전까지 의장의 확인을 받은 위임자에 한한다.

제47조 소집

- ①분과회의의 정기회는 매학기(정규학기) 2번 이상 집회된다.
- ②분과회의의 임시회는 의장, 동연회장 또는 분과회의의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제48조 의결

분과회의는 회칙 또는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탄핵

- ①분과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회칙이나 세칙을 위배한 때, 직무집행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 처리하였다고 사료될 때에는 분과회의에서 해당 분과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탄핵 소추는 제22조 2항의 경우, 혹은 해당 분과장을 제외한 분과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와 분과회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또는 해당 분과장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동운위의 주관 하에 탄핵투표를 실시한다.
- ⑤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제50조 자치령

- ①각 분과는 본 회칙, 세칙 및 총학생회 회칙 내에서 분과 내 자치령을 공포,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②각 분과에서는 5장 1절 40조에 따라 분과장 또는 분과 재적인원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분과회의를 거쳐 분과자치령을 공포,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③자치령의 경우 해당 분과에만 적용이 된다.
- ④자치령의 적용 기간 및 범위는 해당 분과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장 등록기준

제1절 재등록

제51조 정의

- ①각 동아리가 중앙동아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등록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 ②각 동아리원이 회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등록과정이 통과된 재등록서류에 있어야 한다.

제52조 구비서류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동아리 회칙 1부
2. 동아리 소개서 1부
 - 2-1. 동아리 회장 인적사항
 - 2-2. 동아리 현황
 - 2-3. 동아리 활동 목적 및 매체
3. 지난 학기 주요사업 및 매체 활동 사진 6장을 포함한 활동보고서 1부
4. 이번 학기 주요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5. 동아리 회원 명단 1부
 - 5-1. 회원들의 수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회원이란 본 회칙 2장 6조에서 말하는 회원이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5-2. 5-1.의 20인에 군 휴학, 유학 및 교환학생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는 인원은 포함되지 않아야한다.

5-3. 회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학년,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책을 기입해야 한다.

5-4. 회원들이 소속된 단과대의 합이 3개 대학 이상이어야 한다. (공과대학과 창의ICT공과대학은 하나의 단과대로 취급한다.)

5-5. 1개의 단과대 회원이 전체 회원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6-1. 개인정보를 본회에 제공하고 본회가 공적인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원은 제6장 1절 52조에서 말하는 동아리 회원 명단에 기재할 수 없다.

6-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원이 동아리 회원 명단에 기재된 경우 이를 재등록서류 허위 기재로 본다.

제53조 절차

동아리 재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동아리는 매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본회에 필요 서류들을 제출한다. 동연회장은 개강과 동시에 각 동아리에 재등록 공지를 한다.

2. 재등록 서류에 미비가 있을 시에는 제출 마감 24시간 전 제출에 한하여 재제출을 요청하며, 제출 마감기한 전까지 재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 제출한 재등록서류로 심사를 진행한다.

3. 재등록 서류 제출기한은 접수 마감일 18시로 한다.

4. 접수마감과 함께 동연회장은 이를 즉시 공지하며 7일 이내에 동운위를 소집하여 재등록 서류를 심사한다.

4-1. 최소 10명의 회원 소속 여부를 전화를 통해 확인한다.

4-2. 전화번호가 바르게 기재되지 않은 회원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접수마감 이후에 제출한 동아리는 접수를 받되, 징계세칙에 의거하여 심판한다.

6. 심사를 통과한 동아리들은 동연회장이 전동대회에 재등록 인준안을 상정한다.

7. 전동대회에서 등록이 확정된 동아리는 동연회장이 이를 3일내에 공포하며, 공포와 함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제54조 등록취소

① 재등록 서류 심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동운위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단, 부결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취소 안건을 전동대회에서 자동 상정할 수 있다.

1. 재등록 심사 시작 48시간 내 제52조의 서류 일부 혹은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52조의 서류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단, 6장 53조 4-2.로 인해 서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등록취소가 가결된 경우 동아리는 공지 후 24시간 이내 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제신청의 경우 전동대회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취소를 철회할 수 있다.

단, 동아리연합회차원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홍보 행사가 천재지변등으로 인해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동운위 재적인원 3/4이상의 출석과 3/4이상의 찬성으로 해당학기 재등록에 한해 52조 5-1항목의 미비로 인한 등록취소를 철회한다. 단, 52조 5-1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던 동아리들은 차후 해당학기 종강 전까지 52조 5번, 6번 서류를 보완하여 재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해당 동아리는 등록 취소된다. 재 제출된 서류는 53조 4번을 따라 심사한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②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동운위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동대회에 해당 동아리의 등록취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명의 도용, 허위등록자가 적발된 경우
2. 동아리가 주 매체에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3. 동아리가 주 매체와 맞지 않는 활동을 주로 계획한 경우

③전동대회에서 등록취소가 부결된 동아리는 자동으로 주의 1회를 받는다. 단, 출석인원 1/3이상의 찬성을 받은 동아리는 자동으로 경고 1회를 받는다.

④동아리 회장을 포함한 해당 동아리원의 과반수가 동아리 자진해산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제55조 자치공간

①동아리방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동아리의 자치공간이며, 자치공간의 운영에 관해서는 아래 2항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침해 받지 아니한다.

②특별한 사유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치공간이 위치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2. 자치공간 내에 징계 세척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3. 자치공간 내에 징계 세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타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동연회장, 동운위 재적인원 2/3 이상, 해당분과회장 2/3 이상 혹은 전체 동아리 회장 과반수의 발의
6. 전체 동아리 회원 1/10 이상의 발의

③자치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정동아리가 제명, 강등, 등록취소 및 자진해산 등으로 정동아리의 지위를 잃어버린 경우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치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자치공간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동대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한다.

⑤공용 자치공간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공간조정회의를 통하여 사용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제56조 동아리명

①동아리명은 중복될 수 없다. 만일 중복될 경우, 나중에 변경한 동아리를 등록 취소한다.

②동아리명을 변경하는 경우 동운위의 의결을 거쳐 허가한다.

제57조 매체

①본회에 소속된 동아리의 매체는 건전한 대학문화를 향유하고 창달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②취업 및 창업, 자격증을 위한 모임이거나 그 활동의 주제가 불분명한 모임은 문화를 향유한다고 볼 수 없기에 본회 소속의 동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동아리의 매체는 중복될 수 없다. 만일 중복될 경우, 나중에 변경한 동아리를 등록 취소한다.

④동아리의 매체를 변경하는 경우 전동대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한다.

제2절 준등록

제58조 신규 등록

①신규 동아리는 동운위 재적인원 2/3 이상이 참여한 동운위에서 3/4 이상의 찬성을 통해 준동아리로 등록할 수 있다.

②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모든 중앙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여야만 한다.

③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타 단과대학 및 기구 의 산하에 있지 않아야만 한다.

④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이미 존재하는 다른 동아리와 매체가 겹치지 않아야만 한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 ⑤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이미 존재하는 다른 동아리와 이름이 겹치지 않아야만 한다.
- ⑥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6장 1절 52조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⑦신규 동아리의 등록이 부결될 경우 만 6개월 동안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⑧신규 동아리의 등록이 부결될 경우 공고 후 3일 이내로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9조 승격

- ①정동아리 승격 대상은 준동아리들 중 등록한 학기를 제외한 두 학기 이상의 활동을 한 준동아리들로 한다.
- ②1항의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동운위에서 분과를 배정한 후 준동아리의 승격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단, 본 결과를 즉시 해당 분과에 공고하며, 해당 분과의 동아리는 공고 후 24시간 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 ③기존 정동아리의 제명 또는 강등, 등록 취소 등으로 정동아리의 자치공간 공간이 확보된 상태 하에서 2항의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전동대회에서 의결을 거쳐 승격한다.
- ④2항의 심사를 통과한 동아리들은 전동대회에서 자신의 동아리에 대하여 발표를 할 수 있고, 동아리 회장 및 분과장의 질의응답에 답할 수 있다.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동운위에서 결정한다. 시간을 넘겼을 경우, 의장은 해당 동아리에 경고를 할 수 있다. 만일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발표를 진행할 경우 해당 전동대회에서의 승격자격을 박탈한다.
- ⑤동아리들의 발표를 들은 후 비밀투표를 통하여 승격 동아리를 결정한다.
 - 1.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표를 얻은 동아리는 승격된다.
 - 2. 출석인원 1/2 이상, 2/3 미만의 표를 얻은 동아리는 최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경우 승격된다.
 - 3. 과반수의 표를 얻은 동아리가 없다면, 최다득표인 동아리 2개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동아리는 승격된다. 단, 결선투표에서 기권표가 출석인원의 20%를 넘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한다.
- ⑥승격 가능한 동아리가 2개 이상이라면 해당 수의 상위 득표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각각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7장 징계

제1절 동아리 징계

제60조 종류

- ①동아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주의
 - 2. 경고
 - 3. 강등
 - 4. 제명
- ②회원에 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회원 제명

제61조 주의

- ①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동운위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동아리에게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 ②주의의 발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1. 동연회장 및 동연부회장
 2. 해당 분과장
 3. 해당 분과위원 1/3 이상 또는 해당 동아리에 소속된 분과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과위원의 요구
 4. 전체 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
 5. 전체 동아리 회원 1/10 이상의 요구
- ③주의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연회장은 해당 동아리에게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2. 징계세칙에 의거하여 심판한다.
 3. 동운위에서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동운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한다.
 5. 표결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 ④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⑤주의를 선고 받은 동아리는 공고 후 3일 이내로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이의신청은 동운위에서 심의한다.
- ⑦주의의 유효기간은 확정된 날로부터 그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여름학기는 1학기, 겨울학기는 2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⑧주의 2회는 경고 1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62조 경고

- ①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동운위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동아리에게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 ②경고의 발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연회장 및 동연부회장
 2. 해당 분과장
 3. 해당 분과위원 1/3 이상 또는 해당 동아리에 소속된 분과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과위원의 요구
 4. 전체 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
 5. 전체 동아리 회원 1/10 이상의 요구
- ③경고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연회장은 해당 동아리에게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2. 징계세칙에 의거하여 심판한다.
 3. 동운위에서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동운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한다.
 5. 표결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 ④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⑤경고를 선고 받은 동아리는 공고 후 3일 이내로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이의신청은 동운위에서 심의한다.
- ⑦경고의 유효기간은 확정된 날로부터 그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여름학기는 1학기, 겨울학기는 2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⑧경고를 받은 동아리는 다음 학기 동아리지원금을 20% 삭감한다.
- ⑨경고 2회를 받은 정동아리는 다음 학기 동아리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며, 경고 2회를 받은 준동아리는 만 1년 동안 정동아리의 승격 신청을 할 수 없다.
- ⑩경고 3회를 받은 정동아리는 자동으로 강등되며, 경고 3회를 받은 준동아리는 자동으로 제명된다.

제63조 강등

<동아리연합회 회칙>

- ①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해 인륜을 위배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또는 활동이 부진하거나 건전한 대학문화창달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전동대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동아리를 정동아리 지위에서 준동아리로 강등할 수 있다.
- ②강등의 발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연회장 및 동연부회장
 2. 해당 분과장
 3. 해당 분과위원 2/3 이상 또는 해당 동아리에 소속된 분과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과위원의 요구
 4. 전체 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
 5. 전체 동아리 회원 1/10 이상의 요구
- ③강등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연회장은 해당 동아리에게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2. 징계세칙에 의거하여 동운위에서 전동대회 안건상정을 심사한다.
 3. 동운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은 거수 투표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이후 전동대회에서 의결 과정을 속행한다.
 5. 전동대회에서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전동대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투표한다.
 7.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 ④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⑤강등에 대하여 해당 동아리에서 불복 시, 해당 전동대회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논의안건이 아닌 기타안건으로 의사를 진행한다.
- ⑥강등안건에 상정된 동아리는 다음 학기 지원금을 박탈한다.
- ⑦강등된 동아리는 즉시 정동아리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준동아리의 직위를 갖는다.
- ⑧강등된 동아리는 강등된 후 만 1년 동안 정동아리 승급 신청을 할 수 없다.
- ⑨강등이 부결된 경우 경고1회를 부과한다.

제64조 제명

- ①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해 인륜을 위배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또는 활동이 부진하거나 건전한 대학문화창달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전동대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동아리를 제명할 수 있다.
- ②제명의 발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연회장
 2. 해당 분과장
 3. 해당 분과위원 2/3 이상 또는 해당 동아리에 소속된 분과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과위원의 요구
 4. 전체 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
 5. 전체 동아리 회원 1/10 이상의 요구
- ③제명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연회장은 해당 동아리에게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2. 징계세칙에 의거하여 동운위에서 전동대회 안건상정을 심사한다.
 3. 동운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은 거수투표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이후 전동대회에서 의결 과정을 속행한다.
 5. 전동대회에서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전동대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투표한다.
 7.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 ④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⑤제명에 대하여 해당 동아리에서 불복 시, 해당 전동대회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논의안건이 아닌 기타안건으로 의사를 진행한다.
- ⑥제명안건에 상정된 동아리는 다음 학기 지원금을 박탈한다.
- ⑦제명된 동아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며 중앙동아리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
- ⑧제명된 동아리는 제명된 다음 학기부터 만 1년동안 준동아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⑨제명이 부결된 경우 경고1회를 부과한다.

제2절 회원 징계

제65조 종류

회원에 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회원 제명

제66조 경고

- ①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동운위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회원에게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 ②경고의 발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동연회장 및 동연부회장
 - 2. 해당 분과장
 - 3. 해당 회장
 - 4. 해당 동아리원 과반수
 - 5. 해당 분과위원 1/3 이상 또는 해당 동아리에 소속된 분과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과위원의 요구
 - 6. 전체 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
 - 7. 전체 동아리 회원 1/10 이상의 요구
- ③경고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동연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2. 징계세칙에 의거하여 심판한다.
 - 3. 동운위에서 해당 회원은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 4. 동운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한다.
 - 5. 표결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 ④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⑤경고를 선고 받은 회원은 공고 후 3일 이내로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이의신청은 동운위에서 심의한다.
- ⑦경고의 유효기간은 확정된 날로부터 그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여름학기는 1학기, 겨울학기는 2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⑧경고 3회를 받은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 제명 안건에 회부된다.

제67조 회원 제명

- ①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해 인륜을 위배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전동대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②제명의 발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1. 동연회장
 2. 해당 분과장
 3. 해당 회장
 4. 해당 동아리원 과반수
 5. 해당 분과위원 2/3 이상 또는 해당 동아리에 소속된 분과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과위원의 요구
 6. 전체 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
 7. 전체 동아리 회원 1/10 이상의 요구
- ③제명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연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2. 징계세칙에 의거하여 심판한다.
 3. 동운위에서 해당 회원은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동운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한다.
 5. 표결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 ④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⑤회원 제명을 선고 받은 회원은 공고 후 3일 이내로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이의신청은 동운위에서 심의한다.
- ⑦회원 제명안건에 상정된 회원은 즉시 본회와 관련된 모든 직위에서 박탈당한다. 또한 이후 본회와 관련된 모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⑧회원 제명이 된 회원은 즉시 회원명부에서 삭제하며 모든 본회 구성원으로써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또한 이후 본회 구성원으로 다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⑨제명된 회원이 이후 공식 문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⑩회원 제명안건이 부결된 경우 해당 회원의 징계 상태는 경고1회로 한다.

제8장 재정

제68조 수입

- ①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보조금, 각 동아리가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지원금으로 한다.
- ②본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본 회의 수입금이 된다.
- ③본회의 재정은 전동대회의 동의를 얻어 각 동아리에게 추가 재정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제69조 회계연도

- ①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 본회의 임기 시작일부터 마감일까지로 한다.
- ②매 학기마다 예산 및 결산을 하고 연말에 총 결산을 한다.
- ③매 학기 흑자 예산의 잉여부분은 다음 회기의 계산으로 이월한다.

제70조 보고

- ①예산과 결산은 매 학기마다 각 동아리가 제출한 자료와 본회의 자료를 근거로 동운위의 심의를 거쳐 전동대회에 보고한다.
- ②결산보고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집행

- ①예산은 회장이 집행한다.
- ②예비비는 동운위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집행한다.
- ③회장의 예산 집행권은 집행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선거

제72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후보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장단선거관리위원회, 분과장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사퇴한 인원을 제외한 동운위원으로 한다. 그 위원장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한다.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칙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후보자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3조 권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투표사무에 관하여 각 동아리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지시를 받은 동아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세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장 회칙개정

제75조 발의

- ①회칙개정 발의안은 동운위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전동대회 재적인원의 1/4 이상 또는 전체 동아리 회원 1/10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본회 회장단 또는 분과장단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그 회칙개정 제안 당시의 본회 회장단 및 분과장단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76조 의결

- ①회칙개정 발의안은 제안된 날로부터 3일 내로 공고되어야 한다. 단, 동운위 재적인원 과반수로 제안된 회칙개정 발의안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동운위는 회칙개정 발의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회 후 의결하여야 하며, 동운위의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③동운위에서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전동대회 소집 공고와 동시에 공고되어야 한다.
- ④회칙개정안이 전동대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회칙개정은 확정되며, 동연회장은 폐회 선언 후 24시간 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⑤개정된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7조 세칙

- ①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칙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의사진행에 관한 세칙
 2. 본회 선거시행에 관한 세칙
 3. 본회 예산집행에 관한 세칙
 4. 본회 징계기준에 관한 세칙
- ②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일반안건이다.

제78조 발의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동운위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전동대회 재적인원의 1/4 이상의 발의, 동연회장의 발의, 전체 동아리 회원 1/10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79조 의결

- ①세칙개정 발의안은 제안된 날로부터 3일 내로 공고되어야 한다. 단, 동운위 재적인원 과반수로 제안된 세칙개정 발의안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세칙 개정 및 제정은 동운위의 의결로 확정될 수 있다. 동운위는 세칙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동운위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③동운위에서 의결이 부결되었을 경우, 전동대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전동대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동연회장은 개정 및 제정이 확정될 경우 24시간 이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⑤개정된 세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중앙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 선거시행에 관한 세칙은 동아리연합회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본 세칙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적용된다.
- ②본 세칙에 기재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룰미팅 결과 또는 총학생회 선거세칙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원칙

- ①모든 본회의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모든 동아리원은 직접, 평등, 비밀, 보통선거의 원칙을 보장 받는다.

제4조 선거사무협조

각 동아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선거인의 정의

- ①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②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단, 군 휴학, 교환학생,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투표가 불가능한 회원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선거권

해당 학기 동아리재등록 서류에 등록된 회원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7조 피선거권

- ①4학기 이상 본회 회원으로 등록한 정동아리의 회원은 회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②2학기 이상 해당 분과의 회원으로 등록한 정동아리의 회원은 해당 분과 분과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단, 분과장의 피선거권은 1인당 1개로 제한한다.
- ③정동아리로 승격된 지 2학기가 되지 않은 동아리의 경우, 해당 동아리 회원으로 2학기 이상 등록하였다면 해당 분과 분과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위상

중앙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동아리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거 제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하는 동아리연합회 선거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9조 목적

동아리연합회 선거를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구성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 ①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장단선거관리위원회, 분과장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 회장단선거관리위원회와 분과장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한다.
- ③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급의 선거관리위원회만 구성된다.
- ④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제1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①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를 동아리연합회 회원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 ③ 세칙과 각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 본부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 등을 포함한 제제 조치를 각 선거본부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 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당선공고 후 자동으로 해체된다. 단, 당선공고 직전에 이루어진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제반 업무가 남아있을 경우 제반 업무를 마무리한 후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1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과 회장단선거관리위원회장, 분과장선거관리위원회장 총 3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타 선거관리위원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13조 회장단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① 회장단선거를 관할, 감독한다.
- ②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등록하고 룰미팅을 실시한다.
- ③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을 감사하고 비준한다.

제14조 회장단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은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인원 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은 타 선거관리위원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15조 분과장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① 분과장선거를 관할, 감독한다.
- ② 분과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등록하고 룰미팅을 실시한다.
- ③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을 감사하고 비준한다.

제16조 분과장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은 집행부회 재적인원 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은 타 선거관리위원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3장 선거

제17조 선거구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 ① 회장단 선거는 모든 정동아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 ② 분과장 선거는 해당 분과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18조 선거기간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9조 선거일

- ① 동아리연합회선거는 매 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일은 본 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선거인명부 작성

-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이름, 학과, 학번 및 소속 동아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각 동아리당 동아리 대표를 포함한 10명으로 한다. 단 동아리 대표가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후, 동아리 내 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동아리는 해당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⑤ 누구든지 중복되어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제21조 룰미팅

- ①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24시간 이내에 룰미팅을 소집한다.
- ② 룰미팅은 선관위의 2/3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각 선거본부의 대표참관인만이 참석할 수 있다. 단, 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의 참관은 가능하다.
- ③ 룰미팅에서는 선거운동 자료 용량, 선거운동의 범위, 징계, 기호 등을 합의하며, 룰미팅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 선거세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④ 룰미팅에 불참한 후보자 또는 대표참관인은 룰미팅 24시간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룰미팅 이후 4항의 후보자 또는 대표참관인에게 룰미팅 결정 사항을 즉시 공지하며, 후보자 또는 대표참관인은 12시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4항의 사유서가 부결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4장 후보자

제22조 회장단 후보자

-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후보자는 런닝메이트로 팀을 이뤄 출마하여야 한다. 단, 단선일 경우 회장 단독 후보를 인정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후보자는 재적 정동아리 회장 20% 이상의 추천 및 재적 정동아리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추천은 복수 추천이 가능하다.
- ④ 기호의 경우 룰미팅에서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단, 후보자는 후보자의 수를 넘는 숫자를 기호로 할 수 없다.

제23조 선거본부

-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후보자는 선거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 ② 선거본부는 정후보, 부후보, 대표참관인 및 일반 선거운동원으로 구성된다.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 ③선거본부의 구성원은 동아리연합회 회원이어야만 한다.
- ④선거본부의 구성원은 최대 본 회 회원의 1/100로 한다.

제24조 분과장 후보자

- ①동아리연합회 분과장 후보자는 단독으로 출마한다.
- ②동아리연합회 분과장 후보자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않다.
- ③기호의 경우 룰미팅에서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단, 후보자는 후보자의 수를 넘는 숫자를 기호로 할 수 없다.

제25조 회장단 후보자 등록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2조 2항에 의한 추천서
2. 출마소견서
3. 후보자 사진 (3*4 증명사진 3매, 전산 제출 가능)
4. 후보자 재학증명서
5. 후보자 성적증명서
6.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본부 등록원 명단 및 재학증명서

제26조 분과장 후보자 등록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마소견서
2. 후보자 사진 (3*4 증명사진 3매, 전산 제출 가능)
3. 후보자 재학증명서

제27조 후보자 심사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마감 후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만일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 ②후보자가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한다.
- ③후보자의 서류에 결격사항이 없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후보등록의 성공을 전하여야 한다.

제28조 사퇴규정

- ①동아리연합회 간부 및 동아리 회장 중 선거 운동을 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시작일 3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 ②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사유서를 동아리연합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사퇴한 자가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즉시 해당 직위로의 복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후보자 최종등록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하여 후보자 최종등록을 위한 룰미팅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을 다음 각 항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대표 참관인으로 하며, 불참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구비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
2. 선거 시행 세칙 검토

3. 기타 선거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신사협정

제5장 선거운동

제30조 선거운동의 정의

-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② 추천 기간 중 아래와 같은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1.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③ 그 외에 선거운동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여부를 의결을 통해 판단한다.

제31조 선거운동의 기간

- 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 기간 이전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제32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본회의 재적 회원이 아닌 자
- ② 1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징계 경고 1회를 준다.
- ③ 1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33조 선거벽보

-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 이름, 기호, 소속동아리, 출마 소견을 기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후보자의 사진으로 대체한다.
-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를 선거일 전날까지 게시한다.

제34조 선거비용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운동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및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5조 선거자금공영제도

- ① 평등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총 지원 금액은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 학생회비 잔고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1/5 이상이어야 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1절 종이투표

제36조 선거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제37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소속 동아리 및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 ②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 ③회장단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기호 순으로 게재한다.
- ④분과장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기호 순으로 게재한다.

제38조 투표시간

투표소는 선거일 10시에 열고 19시에 닫는다. 단, 마감시간 이전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제39조 기표절차

- ①선거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학생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교부해야 한다.
- ③동시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⑤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⑥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40조 투표참관

-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②한 번에 참관이 가능한 투표참관인은 최대 4인으로 한정한다.
- ③투표참관인은 해당 후보자의 선거본부에 등록된 자로 한한다.
- ④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41조 질서유지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42조 봉인

-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한 후 봉인한다.
-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43조 개표관리

개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이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44조 개함

-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개함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45조 무효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정규의 기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3.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4.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5. 선에 닿게 표기를 한 것
 -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7. 그 외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제46조 개표참관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한 번에 참관이 가능한 개표참관인은 2인으로 한정한다.
- ③ 개표참관인은 해당 후보자의 선거본부에 등록된 자로 한한다.
- ④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47조 보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찬성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해야만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절 전자투표

제49조 선거방법

- ① 선거 방법은 전자기표기 혹은 온라인을 통한 투표로 한다.
- ② 선거 도중에 전자기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후의 선거인들은 종이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다. 단, 종이투표의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선거인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50조 전자기표기

- ① 전자기표기는 동아리연합회가 공인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전자기표기의 기표란에는 후보자의 기호, 소속 동아리 및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권을 위한 기권란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회장단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게재한다.
- ④ 분과장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기호 순으로 게재한다.

제51조 온라인 투표

- ① 온라인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기회 증가를 위해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하는 투표를 말한다.
- ② 온라인 투표의 세부내용은 당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선거시행세칙의 목적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제52조 투표시간

투표소는 선거일 10시에 열고 19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시간 이전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제53조 기표절차

- ① 선거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학생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바코드를 발급받는다.
-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바코드를 교부하는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교부해야 한다.
- ③ 선거인은 바코드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전자기표기에 바코드 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이 투표할 후보를 클릭하여 투표를 완료한다.
- ④ 바코드를 교부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이를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54조 투표참관

-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바코드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한 번에 참관이 가능한 투표참관인은 최대 4인으로 한정한다.
- ③ 투표참관인은 해당 후보자의 선거본부에 등록된 자로 한한다.
- ④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55조 질서유지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56조 개표관리

개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이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57조 개표

- ① 투표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전자기표기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표일련번호와 본 회의 선관위장이 보관하고 있는 개표일련번호를 입력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결과를 공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바코드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58조 개표참관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한 번에 참관이 가능한 개표참관인은 2인으로 한정한다.
- ③ 개표참관인은 해당 후보자의 선거본부에 등록된 자로 한한다.
- ④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59조 무효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바코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투표소에서 확인을 받지 않은 바코드를 사용한 것
 3.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바코드를 사용한 것

4. 하나의 바코드로 두 번의 투표를 했을 경우
②기권표는 유효표로 처리한다.

제60조 보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 전자투표기록, 투표록, 개표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찬성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해야만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7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2조 재선거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을 때
 3. 전체 투표율이 50%미만일 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무효결정이 있는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 또는 큰 부상을 당한 때
 6.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징계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때
- ②재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부터 모든 과정을 재실시 해야 한다.

제63조 보궐선거

- ①회장단 및 분과장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한다.
- ②임기만료일 전 15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③동연회장, 동연부회장 중 한 자리만 궐원이 생긴 때에는 동운위의 의결을 통하여 보궐선거 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동연회장, 동연부회장 모두 궐원이 생겼으나 2항에 의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동운위의 의결을 통하여 분과장 중 한명이 동연회장의 직위를 대신한다. 단, 이때 해당 분과장의 권한은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과 같다.

제64조 재투표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1.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2. 개표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투표 결정이 있는 때
- ②재투표의 경우 기존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권의 경우 기존 선거인명부에 올라온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단, 기존 투표일과 재투표일 사이에 졸업, 자퇴, 퇴학, 제적, 회원 제명 등의 이유로 본 회의 회원에서 박탈된 인원이 있을 경우 그 인원내 한하여 신규 인명부를 작성한다.

제65조 결선투표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1. 후보 둘 이상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2. 최다 득표자와 차 득표자의 득표수의 차이가 기권표 및 무효표의 합보다 적을 경우

②1-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1-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 득표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권의 경우 기존 선거인명부에 올라온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제66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회장단의 보궐선거는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보궐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는 직선제로 한다.

②분과장의 보궐선거는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보궐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는 직선제로 한다.

③회장단의 재선거는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분과장의 재선거는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는 직선제로 한다.

⑤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 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⑥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결선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⑦재투표와 결선투표의 투표일은 해당 학기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8장 선거징계

제67조 선거징계의 정의

선거징계라 함은 세칙 또는 룰 미팅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68조 선거징계의 종류

선거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정명령
2. 주의
3. 경고
4. 피선거권 박탈

제69조 선거징계의 합산

①주의 2회는 경고 1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②경고 2회는 피선거권 박탈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70조 선거징계의 통보

①시정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자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 및 피선거권 박탈은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②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자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부과한다.

③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가 가해진다.

1. 경고 1회 - 공개 사과문 대자보 게시 및 공고 후 24시간 유세 금지. 공개 사과문 대자보는 선거 선전물량에 포함된다.

2. 경고 2회 -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 박탈

제71조 재심의

대표참관인은 경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이의제기

제72조 제기

- ①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대표참관인 및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 ②선거운동원은 대표참관인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선거 운동원이 이의 제기를 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제73조 판결

- ①이의제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 ③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이의제기를 처리하고, 판결이 나온 즉시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을 모든 선거본부에 공지해야 한다.

제74조 불복

- ①선거본부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제기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 처리가 공지된 후 1시간 내에 동아리연합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해야 한다.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복신청이 들어올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복신청을 심사하지 않고 불복신청의 배경이 된 이의제기를 심사한다.
-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이의제기를 처리하고, 판결이 나온 즉시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을 모든 선거본부에 공지해야 한다.
-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제10장 비상대책위원회

제75조 정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란 동연 선거세칙에 마련된 정기적인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 동연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76조 구성

- ①선거로 분과장이 선출되었을 경우, 선출된 분과장은 자동으로 비대위원이 된다.
- ②분과장이 선출되지 않은 분과가 비대위 구성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 분과회의를 통해 각 분과별로 1명씩 뽑아 구성할 수 있다. 단, 해당 구성원은 비대위원으로 그친다.
-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7조 업무 및 권한

- ①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운영위원회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②비상대책위원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동연회장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단,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 예산집행세칙>

제1장 구성

제1조 동아리연합회 재원 종류

동아리연합회의 재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회비
2. 자치예산

제2조 동아리연합회 수입

- ① 동아리연합회의 수입 중, 각 동아리가 납부하는 회비는 자치예산으로 편성한다.
- ② 동아리지원금의 삭감 혹은 박탈로 인해 미지급된 동아리지원금은 자치예산으로 편성한다.
- ③ 그 외의 수입은 학생회비로 편성한다.

제2장 동아리지원금

제3조 지급

- ① 정동아리에 한해 학기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동아리는 학기별 30만원을 지급받는다.
- ③ 동아리연합회는 이 중 5만원을 회비로써 공제한다.

제4조 삭감 및 박탈

동아리지원금은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된 사유로 삭감 혹은 박탈될 수 있다.

제3장 자치예산

제5조 목적

자치예산은 정동아리의 원활하고 활발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공고

자치예산의 지급 기준은 매학기 개강 전에 공지해야한다.

제7조 사용

- ① 자치예산은 편성된 자치예산 내에서 각 정동아리의 신청 받은 후,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 ② 지난 학기 지급된 자치예산의 150%이상이 자치예산에 있을 경우, 자치예산의 최대 20%를 동아리 전반의 복지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단,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회장이 집행한다.

제8조 신청

- ① 자치예산 신청은 각 동아리의 매체관련 활동에 한정한다.
- ② 자치예산 신청은 지정된 양식을 따른다.

제9조 종류

자치예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동아리연합회 예산집행세칙>

1. 정기자치예산
2. 추가자치예산

제10조 정기자치예산

- ① 정기자치예산은 동아리의 정기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동아리 당 한 학기 9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액은 자치예산 규모에 따라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뀔 수 있다.
- ③ 정기자치예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매학기 정규학기 말, 해당 학기의 정기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포함한 정기자치예산 신청서를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한다. 단, 정기자치예산 신청서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른다.
 2.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하여 지급한다.
- ④ 정기자치예산의 활동 인정 기간은 개강 후 종강 전까지, 즉 정규학기로 한다.

제11조 추가자치예산

- ① 추가자치예산은 동아리의 금전적 부담이 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동아리 당 한 학기 최대 3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대 액수는 자치예산 규모에 따라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뀔 수 있다.
- ③ 추가자치예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지원받고자 하는 행사를 진행한 후, 두 달 이내로 해당 행사의 지출 증명을 포함한 추가자치예산 신청서를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한다. 단, 추가자치예산 신청서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른다.
 2.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④ 최대 지원금액내로 제한 없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학생회비

제12조 목적

학생회비는 모든 동아리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

제13조 재정

학생회비의 사용과 결산 보고 등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8장 재정을 따른다.

제5장 동아리 회계감사

제14조 의무

동아리지원금 및 자치예산을 받은 동아리는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을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회계기간

동아리의 학기당 회계기간은 해당 학기 개강부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로 정한다.

제16조 감사방식

- ① 감사는 매학기 초, 재등록서류 제출과 함께 지난학기 회계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② 제출 양식은 동아리연합회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른다.

<동아리연합회 예산집행세칙>

- ③동아리회비, 지원금 등 전반적인 동아리 회계내역을 제출한다. 해당 서류에는 행사 내용이나 비품 구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예산 집행의 증명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④제출받은 서류는 담당 집행부에서 감사를 진행하여, 동아리연합회장이 감사결과를 동운위에 보고한다.

제17조 불이익

- ①회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방식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동아리는 다음 학기 동아리지원금과 자치예산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 ②감사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동아리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 ③자치예산의 신청자격 박탈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이루어진다.

<동아리연합회 의사진행세칙>

제1장 회의진행

제1조 회의 공개

- ①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이하 전동대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개에 관하여는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 공고

공고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공고문의 크기는 A1이상의 사이즈로 해야 한다.
2. 공고문의 위치는 학생회관과 동아리연합회 전용 게시판, 그 외에 동아리방이 위치한 곳으로 해야 한다.
3. 공고문은 해당 행사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4. 공고문을 훼손시킨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5. 동아리연합회 전용 게시판은 동아리연합회의 승인을 받은 공고문만 게시할 수 있다.

제3조 정족수

- ①회칙 또는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선거 미 실시로 인한 대표자 부재는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단, 회장단의 부재로 인한 비상대책 위원회의 경우 그 구성원 모두를 재적인원으로 인정한다.
- ③징계안건의 경우, 안건대상자 및 안건대상동아리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 ④투표를 실시할 때에 자리를 비운 인원은 해당 투표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 발언의 자유

- ①발언은 발언권을 가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저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 ②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의장의 결정에 공동의안을 제출하여 가결시킬 수 있다.

제5조 발언권

- ①발언자는 비표를 들어 의사표시를 하며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 ②발언 시 발언자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설명을 한다.
- ③한 안건의 총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한다. 단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있으면 10분의 발언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 ④한 발언 당 발언 시간은 최대 3분으로 한다.
- ⑤한 안건의 총 발언 시간은 의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30분을 늘릴 수 있다.
- ⑥참관인의 발언은 의장이 제안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일사부재리

- ①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 ②의결기구의 재적인이 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여길 경우, 의장에게 제안하여 의장이 발의 후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동아리연합회 의사진행세칙>

③안건이 의결된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의 의결 통해 결정을 반복할 수 있다. 의결기구 간의 위계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동총회 > 전동대회 > 동운위 > 집행부회의

④이미 종료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동일한 의결기구에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여길 경우, 해당 의결기구의 재적인원의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2장 출결

제7조 출결

①출석, 지각, 조퇴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회 선언 후 5분 이내 출석: 출석
2. 개회 선언 후 5분 이후 30분 이내 출석: 지각
3. 개회 선언 후 30분 이후 출석: 결석
4. 개회 선언 후 30분 이내 퇴장: 결석
5. 폐회 선언 전 30분 이내 퇴장: 조퇴
6. 폐회 선언 전 누계 30분 이상 이탈: 결석

②같은 회기에 지각과 결석을 거듭한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8조 퇴장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사진행에 협조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다.

1.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하는 경우
2. 자는 경우
3. 소음을 내어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4. 타 참석자에게 맹목적인 비난, 비하 발언을 한 경우
5.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회의를 방해한다고 사료되는 경우

②2회의 권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장은 해당 참석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③퇴장 당한 참석자는 결석 처리한다.

<동아리연합회 징계기준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및 행위 확인 시 세칙 및 상위법에 의한다.
- ② 본 세칙에 의해 주의, 경고 안건이 상정되었을 경우 동아리 운영 위원 회의(이하 동운위) 이상 기구의 의결을 통하여 징계를 가한다. 강등, 제명의 경우 전동대회 이상 기구의 의결을 통하여 징계를 가한다.
- ③ 본 세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사안에 따라 의결기구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 ① 본 세칙은 죄를 범한 본 회의 동아리 및 회원에게 적용한다.
- ② 본 세칙에서 회원이 죄를 범해 동아리에 징계가 가해질 경우, 가해진 징계가 주의 이하라면 회원에게는 경고, 경고 이상이라면 회원 제명에 처한다.
- ③ 회원이 죄를 범한 후 회원에 대한 징계와 동아리에 대한 징계는 따로 적용한다.
- ④ 죄를 범한 회원의 소속 동아리가 여러 곳일 경우 정황을 통해 어느 동아리 활동을 하던 도중 범죄행위가 일어났느냐를 판단해 징계대상 동아리를 확정한다. 만일 여러 동아리에서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 동아리를 모두 징계대상으로 삼는다.
- ⑤ 징계대상 동아리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죄를 범한 회원이 속한 모든 동아리에 징계를 처한다.
- ⑥ 죄를 범한 사람이 동아리연합회 소속 회원이더라도, 본회의 동아리와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동아리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⑦ 범한 죄가 본 세칙의 여러 조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되는 조항 중 가장 높은 징계로 처벌한다.

제3조 징계의 감경

- ①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단, 의결기구의 의결을 통하여 그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징계의 적용

한 번에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각각의 징계를 합산해서 받는다. 단, 제명 안건에 올라간 동아리에 추가적인 징계는 주지 아니한다.

제2장 인륜에 관한 죄

제5조 상해와 폭행

- ① 사람을 상해한 동아리는 제명 또는 강등에 처한다.
- ②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 ③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가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제6조 성폭력 사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동아리연합회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회칙'을 따른다.

제7조 강도와 절도

- 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동아리는 제명 또는 강등에 처한다.
- ②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제8조 증거인멸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제9조 무고

- ①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 ② 무고함이 증명된 동아리에는 동운위 이상 기구의 의결을 통하여 가해진 징계를 철회한다.

제10조 회원 제명

제2장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가 확정된 시점에서 해당 동아리의 징계 유무와 상관없이 동아리 연합회의 회원에서 제명한다.

제3장 화재와 수재 및 안전에 관한 죄

제11조 방화

불을 놓아 자치공간 또는 공용공간을 소훼한 동아리는 제명 또는 강등에 처한다.

제12조 화재위험 물건방치

- ① 자치공간 내에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을 보관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단, 동아리의 매체특성상 위험물질이 필요한 경우, 동운위에서 안전한 보관기준을 승인 받은 후 보관할 수 있다.
- ② 자치공간 내에 전열기구와 같은 화재위험 물건을 보관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제13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제14조 일수

- ① 고의로 물을 넘겨 자치공간 또는 공용공간을 침해한 동아리는 제명 또는 강등에 처한다.
- ② 과실로 물을 넘겨 자치공간 또는 공용공간을 침해한 동아리는 제명 또는 강등에 처한다.

제15조 배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배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배수를 방해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제16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 ① 음용수를 공급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마시지 못하게 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②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을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제17조 자치공간 내 취침행위

- ① 자치공간 내에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취침을 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 ② 자치공간 내에 이불, 베개 등을 보관하고 있는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단, 동아리 활동 특성상 동아리 방 내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동운위의 승인을 받은 후 보관할 수 있다.

제18조 자치공간 내 취사행위

- ①자치공간 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 ②자치공간 내에 취사도구를 보관하고 있는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단, 동아리 활동 특성상 동아리방 내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동운위의 승인을 받은 후 보관할 수 있다.

제19조 자치공간 내 위험물

자치공간 내에 위험이 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을 소지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제20조 자치공간 안전점검

각 동아리에서는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은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제4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1조 공무집행방해

- ①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회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동아리는 제명 또는 강등에 처한다.
- ②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회원에 대하여 방해를 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제22조 분과회의 불성실

- ①분과회의에 결석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②분과회의에 결석한 분과장은 경고에 처한다.

제23조 동운위 불성실

- ①동운위에 지각한 분과장에게는 구두경고를 준다.
- ②동운위에 조퇴한 분과장에게는 구두경고를 준다. 구두경고를 2회는 경고 1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③동운위에 결석한 분과장은 경고에 처한다.
- ④동운위에 지각한 동연회장, 동연부회장은 경고에 처한다.
- ⑤동운위에 조퇴한 동연회장, 동연부회장은 경고에 처한다.
- ⑥동운위에 결석한 동연회장, 동연부회장은 경고 2회에 처한다.
- ⑦위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동아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징계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분과장은 동운위의 전체 출석의 3분의 2 이상은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동운위 전체 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

제24조 전동대회 불성실

- ①전동대회에 지각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②전동대회에 조퇴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③전동대회에 결석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 ④전동대회에 지각한 분과장은 경고에 처한다.
- ⑤전동대회에 조퇴한 분과장은 경고에 처한다.
- ⑥전동대회에 결석한 분과장은 경고 2회에 처한다.
- ⑦전동대회에 지각한 동연회장, 동연부회장은 경고 2회에 처한다.
- ⑧전동대회에 조퇴한 동연회장, 동연부회장은 경고 2회에 처한다.
- ⑨전동대회에 결석한 동연회장, 동연부회장은 회원 제명에 처한다.
- ⑩위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동아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징계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전동총회 불성실

- ①전동총회에 회원 중 1/3이상 또는 동아리 회장이 지각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②전동총회에 회원 중 1/3이상 또는 동아리 회장이 조퇴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③전동총회에 회원 중 1/3이상 또는 동아리 회장이 결석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 ④전동총회에 지각한 분과장은 경고에 처한다.
- ⑤전동총회에 조퇴한 분과장은 경고에 처한다.
- ⑥전동총회에 결석한 분과장은 경고 2회에 처한다.
- ⑦전동총회에 지각한 동연회장, 동연부회장은 경고 2회에 처한다.
- ⑧전동총회에 조퇴한 동연회장, 동연부회장은 경고 2회에 처한다.
- ⑨전동총회에 결석한 동연회장, 동연부회장은 회원 제명에 처한다.
- ⑩위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동아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징계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서류위조

공식적인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 변조한 동아리는 제명 또는 강등에 처한다. 단, 재등록 구비서류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6장 54조를 따른다.

제27조 기한 내 서류 미 제출

- ①재등록서류 제출기한 내에 동아리 재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②기한 내에 동아리지원금 및 자치예산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③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④기타 공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동아리와 회장은 경고에 처한다.
- ⑤기타 공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회원은 경고에 처한다.

제28조 선거방해

- ①정당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동아리는 제명 또는 강등에 처한다.
- ②정당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회원은 회원 제명에 처한다.

제5장 공공복리에 관한 죄

제29조 교통방해

- ①동아리 홍보기간 외에도 홍보물을 배치하는 등 공용공간에서 교통을 방해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②공용공간에 적치물을 두거나 대형쓰레기를 배출해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제30조 소음

- ①22시 - 06시 사이에 공용공간 및 자치공간에서 소음을 내는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②동아리 방문을 열고 소음을 내는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단, 신입생 모집을 위해 개강 후 2주간은 이를 허용한다.
- ③시험기간 및 그 1주일 전에 소음을 내는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제31조 홍보

- ①과도한 동아리 홍보활동으로 민원이 들어온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동아리연합회 징계기준세칙>

- ②동아리 홍보활동을 할 때에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도용을 하여 활동을 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 ③행사가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길거리나 학교시설물에서 홍보물을 제거하지 않은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제32조 흡연

자치공간 또는 공용공간에서 흡연한 동아리는 제명 또는 강등에 처한다.

제33조 손괴

- ①학교시설물을 손괴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②동아리연합회의 대여물품을 손괴한 동아리는 해당 대여물품을 배상하게 한다.
- ③동아리연합회의 자산을 손괴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 ④동아리연합회의 자산 및 대여물품을 상습적으로 손괴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제34조 타동아리 권리침해

- ①공간조정회의를 거쳐 타동아리가 정당하게 대여한 공간 또는 타동아리의 자치공간을 무단으로 사용, 침범한 동아리는 경고에 처한다.
- ②타동아리의 자치공간을 침해한 동아리는 제명 또는 강등에 처한다.
- ③공간조정회의 및 공간 사용 규칙을 3번 이상 어긴 동아리는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징계안건에 상정한다.

제35조 위생

오물 또는 쓰레기를 공용공간에 배출한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

제36조 품격

- ①중앙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의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동아리는 제명 또는 강등에 처한다.
- ②사회적 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동아리 혹은 동아리원은 징계에 처할 수 있다.

< 동아리 대외활동 주최 지원에 관한 세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중앙대학교 동아리 대외활동 주최 지원에 관한 세칙은 정동아리 및 준동아리가 대외활동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본 세칙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소속 중앙동아리에 적용된다.
- ②본 세칙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대외활동 주최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 결과에 따른다.

제2장 대외활동 주최 지원 위원회

제3조 지위

위원회는 본 예산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진다.

제4조 구성

- ①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이하 동연회장)이 맡는다. 단, 동연회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하 동연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 ③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동아리연합회 회장
 - 2.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 3. 대외연대사업 국장
 - 4. 학생지원처 학생팀 동아리 담당 교직원
 - 5. 해당 분과장 1명

단, 위 구성원 중 공석이 있을 경우 타 분과장을 추가한다.

제5조 권한

- ① 지원 신청 동아리 예산에 관한 심의권
- ② 지원 신청 동아리의 신청내용 평가 및 이의제기 심사권
- ③ 지원에 관련된 회칙 및 세칙 위반 동아리의 징계요청권
- ④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아리의 대외활동 지원에 관한 기타사항

제6조 소집

- ①위원회는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지원에 관한 중대한 문제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위원회 2/3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장 절차

제7조 신청

제출 양식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른다. 양식에는 활동 비용을 포함한 예산안과 상세한 활동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공지하도록 한다.

제8조 회의진행

- ①위원회 구성원 2/3이상 출석과 신청 동아리 대표자가 출석하였을 경우 회의를 진행한다.
- ②회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 동아리의 활동 계획 발표
 - 2. 활동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
 - 3. 지원 예산 또는 내용 논의

제9조 의결

- ①위원회는 구성원 재적인원 2/3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의결을 진행한다.
- ②회의에서 협의된 지원 예산에 대한 의결은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③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10조 보고

- ①예산 집행의 증명 자료 양식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른다.
- ②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원회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회칙 및 세칙에 따른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제기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아리에서 불복 시, 공지 후 48시간 이내로 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 논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할 수 없다.